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84호 2021. 2. 9.(화)

##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513호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
남해군 조례 제2514호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남해군 조례 제2515호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5
남해군 조례 제2516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3
남해군 조례 제2517호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30
남해군 조례 제2518호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39
남해군 조례 제2519호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183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44
남해군 공고 제2021-188호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 군청, 도로) 결정(변경) 공람·공고	45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513호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2월 9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청사신축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복지국(행정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청년혁신과, 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관광경제국(문화관광과, 지역활성화과, 해양수산물과, 체육진흥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14호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2월 9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남해군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남해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를 “남해군의회” 로 한다.

제3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을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용일자” 를 “사용일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 차례” 를 “1회” 로, “공개할 수 있다” 를 “공개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한 차례” 를 “1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할 수 있다” 를 “취하여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 차례” 를 “1회로”, “점검할 수 있다” 를 “점검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 요구, 경고” 를 “환수, 징계 요구” 로 한다.

-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15호

##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2월 9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4조에 따른 남해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 비용 지원 신청서를 남해군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에 남해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 2. 남해군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1명
-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
-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제9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비용의 반환) ①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회의 및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3조제3항 관련)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구분	내 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민사 소송 · 행정 소송	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	800,000 1,000,000	1. 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이상)시에 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에 승소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다만, 화해의 성립, 인락, 피고경정, 소취하(쌍불취하 포함)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지급액의 반액을 지급한다.(조건부 취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감정·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금액  5. 그 밖의 실비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5천만원 미만 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다. 1억원 이상	2,500,000 3,000,000 4,000,000		
	3. 상고심 및 환송심	원심의 1/2		
헌법 재판 소 관할 심판	1. 일반사건	2,000,000	3.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5,000,000		
형사 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군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3,000,000이내 5,000,000이내 7,000,000이내		1. 출장여비 :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실비

-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2. 착수금은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구비서류

- 가. 착수금 신청 : 신청서, 소가 증명원  
나. 승소사례금 신청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접수증  
다. 그 밖의 비용 : 신청서, 인지·송달료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등 해당서류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3조제3항 관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1)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비용
  -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
  
3.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남해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제9조 관련)

사 건 명	법원			사건
당 사 자	원 고		소송대리인	
	피 고		소송대리인	
판결결과				
판결일자			소송물가액	
판결이유				
대 책				
첨 부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 란에 “피고인명” 을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남해군 조례 제2516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2월 9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군이 조성한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등) ①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
2. 창선공익장례식장: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437번길 15

② 장사시설의 세부 명칭과 사용 토지는 별표 1과 같고, 사용기준과 사용대상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사용신고)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를 작성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및 관리비 이외의 석물 등 연고자가 부담하는 부대비용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서 별표 4에 따른 사람
- 3.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 4.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는 무의탁사망자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
-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군수는 장사시설이 있는 서면 연축리에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이 사망하여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연고자나 사전사용 신고한 사람이 사용기간 중에 사용을 포기하거나 사전사용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 1. 사용기간 1년 이내: 100분의 50 반환
- 2. 사용기간 1년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40 반환
- 3. 사용기간 2년 초과 3년 이내: 100분의 30 반환
- 4. 사용기간 3년 초과 4년 이내: 100분의 20 반환
- 5. 사용기간 4년 초과 5년 이내: 100분의 10 반환
- 6. 사용기간 5년 초과: 반환하지 않음
- ② 제1항의 사유로 관리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할 계산하여 남은 관리비를 반환한다.

제7조(사용기간) ①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사용일부터 30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지난 장사시설의 연고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년 이내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신고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 1. 사용신고한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장사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 1.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2. 연고자의 요구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거나 유골 등을 반환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9조(사용신고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

- 1. 남해군 관할 구역 밖에서 각종 개발행위 등의 사유로 발굴된 무연분묘의 개장 유골인 경우
- 2. 남해군 관할 구역 밖의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한 적출물 등의 경우
-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변경신고)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연고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
- 2. 사망,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하거나, 연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유골 반환 신청 등) 연고자가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거 및 개장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신고를 취소하였거나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취소 또는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연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유골의 수거 또는 개장을 하지 않아 무연분묘로 간주되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당에 안치한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장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고자가 부담한다.

제13조(시설설치 등) ① 분묘 등의 점유면적 및 시설설치 기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영 제23조에 따르며, 세부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자연장지의 사용방법은 법 제10조 및 영 제8조에 따르며,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봉안평장으로 안치하는 유골함은 목재 등 부식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봉안당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유골함에 넣어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안치할 수 있으며 유골함은 도자기의 특성과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⑤ 장사시설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은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망자 발생 시에 시설을 변경하여 함께 안치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등) 장사시설의 연고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훼손하였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군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장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연고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는 제외한다)와 장사시설 중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장사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 및 사용 토지 (제2조제2항 관련)

1.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

구 분	명 칭	사용 토지
장례식장	남해추모누리장례식장	남해군 서면 연죽리 961-1번지 일원
매장·봉안평장 묘역	유자·치자·비자·동백·개나리	남해군 서면 연죽리 산 8, 산 13-1, 893, 961-1, 963번지 일원
봉안시설(봉안당)	안 락 원	
화장시설	영 화 원	
산골시설	유택동산	
자연장지	추모정원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산 137번지 일원

비고

1. “매장묘역” 이란 분묘의 형태로 시신 및 유골을 매장하기 위하여 조성된 묘지를 말한다.
2. “봉안평장 묘역” 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장소에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묻어 봉분 없이 평탄하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산골시설” 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군수가 지정하는 특정한 장소에 뿌려서 장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창선공익장례식장

구 분	명 칭	사용 토지
장례식장	창선공익장례식장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464번지 일원

[별표 2]

장사시설의 사용구분(제2조제2항 관련)

1.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

장사시설명	기 준	면적 및 안치기수 등	사용자
매 장 묘 역	분묘 1기당	10㎡ (합장 15㎡)	군민
봉안평장 묘역	1구당	1.35㎡	군민
봉안당(안락원)	유골 1구당	1개 안치단	군민 또는 타지역민
봉안담	가족형 1개소	12기 안치	군민
	문중형(소) 1개소	24기 안치	군민
	문중형(대) 1개소	48기 안치	군민
봉 안 묘	1개소당	30㎡	군민
자 연 장 지	1구당	0.25㎡	군민 또는 타지역민
산 골 시 설	유골 산골		군민 또는 타지역민

비고

1. “군민”이란 사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 또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사시설의 사용은 신청순서에 따라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정한다.

[별표 3]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4조제1항 관련)

1. 매장묘지 및 봉안시설 등

시설구분	사용료(원/30년)	관리비(원/1년)	사용(연장)기간	비고
매장묘지	860,000	20,000	30년(1회)	군민만 사용
봉안평장	130,000	5,000	30년(1회)	군민만 사용
봉안당	160,000	10,000	30년(1회)	타지역민 3배
봉안묘	3,120,000	60,000	30년(1회)	군민만 사용
봉안담 (가족형 12기)	3,950,000	12,000	30년(1회)	군민만 사용
봉안담 (문중형 24기)	7,900,000	20,000	30년(1회)	군민만 사용
봉안담 (문중형 48기)	15,800,000	30,000	30년(1회)	군민만 사용
자연장 1구	300,000	2,000	30년(1회)	타지역민 3배
자연장 2구	550,000	3,000	30년(1회)	타지역민 3배
자연장 4구	1,100,000	5,000	30년(1회)	타지역민 3배
자연장 6구	1,650,000	7,000	30년(1회)	타지역민 3배
자연장 문중·종중 (48기 이하)	기당/275,000	15,000	30년(1회)	타지역민 3배

비고

1. 묘지 또는 봉안된 유골의 현존지가 군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와 군민이 아닌 타지역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봉안당과 자연장에만 안치할 수 있으며 사용료와 관리비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사용료와 관리비는 30년 단위로 징수하되,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위해 임시로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3. 석물 등 시설물의 설치에 장사시설의 연고자가 부담한다.

2. 화장장 및 장례식장

구분	내용	사용료(원)		비고
		군민	타지역민	
화장장	대인 (만15세 이상)	60,000	500,000	
	소인 (만15세 미만)	40,000	300,000	
	사산아	30,000	200,000	
	개장유골	40,000	200,000	
	기타 적출물(kg당)	4,000	4,000	
장례식장	영결식장	무료	100,000	
	빈소 및 접객실 (시간당)	특실 : 15,000원 이하 일반실 : 10,000원 이하		
	안치실 (시간당)	6,000원 이하		
	염습실 (회당)	50,000원 이하		

비고

1. 빈소 및 접객실, 안치실의 사용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한다.

[별표 4]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체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체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별표 5]

분묘 등의 시설물 설치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분묘의 규격 및 형태

묘역별	규 격(cm)	비고
석물 설치 묘역	가로110 × 세로220 × 높이 50(둘레석)	잔디 높이 30cm (둘레석 윗봉분)
석물 없는 묘역	가로110 × 세로220 × 높이(지면에서)20	
봉안평장묘역	가로 90 × 세로150	
봉안묘역	가로470 × 세로630	

2. 묘비 등의 규격

구 분		규격(cm)
비석	입비	가로25 × 세로(높이)75 × 두께12
	와비	가로50×세로35×높이(지상:전면5×후면10,지하:5)
	입비의좌대	가로40 × 세로25 × 높이20
	봉안평장와비	가로40 × 세로30 × 전면높이7, 후면높이15
둘레석	전·후면(상·하단)	가로110 × 세로21 × 두께9
	양 측면(상·하단)	가로178 × 세로21 × 두께9
	중단(전·후면)	가로76 × 세로32 × 두께5
	중단(양 측면)	가로175 × 세로32 × 두께5
	사각기둥	가로21 × 세로15 × 높이32
상석	상석	가로60 × 세로45 × 두께15
	좌대	가로60 × 세로45 × 두께6
	밑복석	가로15 × 세로15 × 지름15
	뒷대석	가로60 × 세로15 × 높이12

[별표 6]

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제13조제2항 관련)

1. 자연장지의 시설기준

- 가. 고인표시는 가로20cm×세로10cm×높이20cm 이내의 검정색 재질의 석물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유골함의 용적은 가로20cm×세로20cm×높이20cm 이내이어야 한다.
- 다. 가목에 따라 고인의 표시를 할 경우 석물이 지면으로 부터 3cm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연장지 내에서의 행위 제한

- 가.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
- 나. 제단, 비석 등 추모시설의 설치
- 다. 취사, 소풍, 야영, 행사, 촛불을 피우는 행위 등
- 라. 자연장지를 고의적으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 마.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 바.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을 판매, 제공하는 행위
- 사. 그 밖에 자연장지 운영·관리에 방해가 되는 사항

[별지 제1호서식]

###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사망자 (사전사용자)	성명 (사전사용)	성별	생년월일 (사전사용)
	주소 (등록기준지)		사망장소
	사망년월일		사망원인
신고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 (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시설	장사시설 구분		사용기간 및 안치번호					
	매장묘역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장지								
봉안평장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장지							
봉안당 (안락원)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장지							
봉안담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장지							
봉안묘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장지							
자연장지 (추모정원)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장지							
화장시설		년 월 일 시 분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사망자 (사전사용자)	성명 (사전사용)	성별	생년월일 (사전사용)							
	주소 (등록기준지)		사망장소							
	사망년월일		사망원인							
신고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 (기간연장) 시설	장사시설 구분		사용기간 및 장지							
	매장묘역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장지								
	봉안평장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장지								
	봉안당 (안락원)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장지								
	봉안담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장지								
	봉안묘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장지										
자연장지 (추모정원)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장지									
화장시설		년 월 일 시 분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별지 제3호서식]

### 남해추모누리 연고자 변경 신고서

사용시설	명칭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		
	구분 <input type="checkbox"/> 매장묘역 <input type="checkbox"/> 봉안평장 <input type="checkbox"/> 봉안당 <input type="checkbox"/> 봉안담 <input type="checkbox"/> 봉안묘 <input type="checkbox"/> 자연장지		
	소재지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 일원		
	번호	연고자 성명	

당초 연고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변경 연고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사항	
------	--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유골 반환 신청 및 인수증**

사용시설	명칭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		
	구분	<input type="checkbox"/> 매장묘역 <input type="checkbox"/> 봉안평장 <input type="checkbox"/> 봉안당 <input type="checkbox"/> 봉안담 <input type="checkbox"/> 봉안묘 <input type="checkbox"/> 자연장지		
	소재지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 일원		
	번호	규모	기	

사망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연고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사항	사용신고년월일
	관리비납부조건
	유골반환사유
	연고자와의 관계
	관계공무원 확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의 반환을 신청하고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청 및 인수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2517호

##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2월 9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의류수거함의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 관내에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제3조(의류의 범위) 이 조례에서 “의류”란 면 의류, 동·식물성 섬유 의류, 합성섬유류 의류, 그 밖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의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수거함의 규격·설치기준 등을 마련해서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관리자 지정 등) ① 군수는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의류수거함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그 관리 능력이 있는 자

2. 그 밖에 관리능력이 인정되어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관리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의류수거함 관리·운영 지정서를 내어 주어야 한다.

④ 수거함 관리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 해지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에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3회 이상의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 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관리자 지도) 군수는 수거함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 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 관리
-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 4. 군수가 정한 수거함 설치·관리기준 및 관리계획 준수
- 5. 그 밖에 수거함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관리자 준수사항) ① 관리자는 주 1회 이상 의류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 적정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수거함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 1. 2차로 이상 및 6m 이상 도로변
- 2. 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m 이내
- 3. 학교주변 보도 및 공원 내, 도로변 사유지
- 4. 그 밖에 군수가 설치를 금지한 장소

④ 관리자는 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을 남해군의 실정에 맞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⑤ 관리자는 별표 1에 따른 안내문을 수거함에 부착해야 한다.
- ⑥ 관리자는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자 책임) 관리자는 수거함 관리 및 의류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2조(도로점용허가 등) ① 관리자는 수거함 설치 위치가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거함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관리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거함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이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 보되,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 제6조에 따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1]

의류수거함에 부착할 안내문(제10조제5항 관련)

1. 관리번호 부착

관리번호 :        -        호
관리자(상호) :
연락처 :

2. 배출가능 종류 안내문

- 배출 가능한 제품: 면 의류, 동·식물성 섬유 의류, 합성섬유류 의류, 그 밖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
- ※ 이외의 품목은 제외(솜이불, 베개, 신발, 롤러스케이트, 바퀴가방 등)

※ 관리번호, 안내문 크기 및 부착위치는 의류수거함 규격 등을 고려 작성 및 부착

[별지 제1호서식]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신청서

(앞 면)

신청인	주 소			
	단체명(성명)	(남/여)	전화번호	
설 치·운 영 기 간				
설 치 위 치				
설 치 면 적(m <sup>2</sup> )				
설 치 규 격 (가로×세로×높이)				
수 거 품 목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남 해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의류수거함 관리·운영 지정서

관리번호				
관리자	주 소			
	단체명(성명)		전화번호	
지 정 기 간				
설 치 위 치				
설 치 면 적(m <sup>2</sup> )				
설 치 규 격 (가로×세로×높이)				
수 거 품 목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류수거함 관리자(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남해군 조례 제2518호

##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2월 9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남해군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사용 시 의사·약사의 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불용의약품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등을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재 약국 또는 군 보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군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등에 관한 사용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등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등의 사용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을 분기별로 수거·운반·처리 한다. 다만, 시기와 횟수는 발생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19호

##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1년 2월 9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지정” 을 “지정 등”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대상 지역 및 구역
3. 그 밖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 - 183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김 담 0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00로
	소하천명	중 앙 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서면 서상리 1684번지(1214-2번지 인근)		
	면적	1 m <sup>2</sup>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sup>2</sup>
	기간	2021. 2. 5. ~ 2025. 12. 31.		
	목적 및 사유	단독주택 우수관로		

남해군 공고 제2021 - 188호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 군청, 도로) 결정(변경)  
공람·공고**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군청, 도로)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9일

**남 해 군 수**

- 1. 공람기간 : 신문 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 2. 관련도면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4)
- 3.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 군청,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붙임1> 참조
- 4. 의견 제출 방법
  - 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남해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남해군청	군 청	남해읍 서변리 24-1번지 일원	16,069	증)2,326	18,395	경상남도 고시 제391호 (1993.11.25.)	

나)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남해군청	○면적증가(증2,326㎡) A=16,069㎡→18,395㎡	○ 공공청사의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공공청사 부지 일부 경계를 변경하고자 함

나. 교통시설

1) 도로 조서 및 사유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	15	국지 도로	1,064	남해읍 북변리 88-9	남해읍 아산리 924-1	일반 도로	-	건고 제406호 (1973.10.12.)	도시 지역
변경	중로	2	2	15	국지 도로	1,064	남해읍 북변리 88-9	남해읍 아산리 924-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20	8	국지 도로	230	남해읍 서변리 46-1	남해읍 서변리 187-8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 지역
변경	소로	2	20	8	국지 도로	410	남해읍 북변리 139-3	남해읍 서변리 187-8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39	8~12	국지 도로	651	남해읍 남변리 402-1	남해읍 아산리 447-5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 지역
변경	소로	2	39	8	국지 도로	646	남해읍 남변리 402-1	남해읍 아산리 447-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42	8	국지 도로	116	남해읍 서변리 65-44	남해읍 서변리 69-1	일반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 지역
변경	소로	2	42	8	국지 도로	301	남해읍 아산리 396-6	남해읍 서변리 69-1	일반 도로	-		
폐지	중로	2	7	15	국지 도로	171	남해읍 북변리 139-3	남해읍 서변리 46-1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20-5호 (2020.01.09.)	도시 지역
폐지	중로	3	11	12	국지 도로	175	남해읍 아산리 396-6	남해읍 서변리 65-41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20-5호 (2020.01.09.)	도시 지역

나)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2호선	중로2-2호선	○ 구역조정	○ 공공청사 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 노선변경
소로2-20호선	소로2-20호선	○ 노선연장 - L = 230m → 410m	○ 공공청사 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 노선변경
소로2-39호선	소로2-39호선	○ 도로폭 및 연장 변경 - B = 8~12m → 8m - L = 651m → 646m	○ 공공청사 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 노선변경
소로2-42호선	소로2-42호선	○ 노선연장 - L = 116m → 301m	○ 공공청사 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 노선변경
중로2-7호선	-	○ 폐지	○ 공공청사 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 노선변경
중로3-11호선	-	○ 폐지	○ 공공청사 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 노선변경

□ 남해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공공청사) 결정도면

